

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

신학기 소비자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

방문판매, 다단계판매 편



한국소비자원
Korea Consumer Agency

방문 판매

- ✓ 강의실이나 캠퍼스에서 “100% 자격증 취득, 특별할인, 무료” 등을 언급하며 **충동구매** 유도
- ✓ 학교·교수추천, 장학혜택을 사칭하여 **교재구입**이나 **강의 등록**을 권유
- ✓ 훼손, 고의로 청약철회기간을 지연시켜 교묘히 **환불 방해**



- ▶ 계약은 신중하게,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하고, 판매자 정보를 알아두세요.
- ▶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**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 청약철회(환불)가 가능합니다.**





다단계 판매

- ✓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,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들을 유인해 **합숙 생활**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
- ✓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하며 수백만 원의 **물품 강매, 대출 강요**
- ✓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교묘히 **환불 방해**



▶ 세상에 공짜는 없다. 단기간 고수익 일자리는 의심해보자!

▶ 불법으로 의심된다면 **가입 거부**, 상품을 구입했다면 **사용하거나 훼손하지 마세요.**

방문판매, 다단계 판매 기억하세요!



방문판매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의심!

▶ 방문판매원은 계약 체결 시 **방문판매업자의 성명, 상호, 주소, 전화번호**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

포장지를 훼손했더라도 청약철회 가능!

▶ 방문판매로 인한 **계약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** 계약철회 가능

▶ 다만, 단순 포장 훼손이 아닌 제품 자체가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.



실용적인 소비자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?

한국소비자원 누리집(홈페이지)

www.kca.go.kr

1372소비자상담센터

www.ccn.go.kr

행복드림

www.consumer.go.kr

